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3
----------	-----

제출연월일: 2025. 5. 29.

제출자: 울주군수

1. 제안이유

민선8기 공약사업 중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대체사업으로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경비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출산장려지원에 따른 산후조리경비 신설(안 제5조)

다. 제10장 산후조리경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설(안 제29조, 안 제30조, 안 제31조)

3.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붙임 1

나. 관련 법령: 붙임 2

다. 현행 조례 및 규칙: 붙임 3

라. 법제 및 규제심사: 2025. 4. 29. (의견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2025. 4. 4. 29. (의견 없음)

바. 입법예고: 2025. 5. 1. ~ 5. 21. (20일간, 의견 없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후조리경비”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산전후”를 “산전·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산후조리경비 지원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하게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 또는 지원물품을 환수하거나 그 가액을 반환받아야 한다.

제4장의 제목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을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산전후”를 “산전·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군수는 산전·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을”을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을”로,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를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전후”를 “산전·후”로, “배부하거나 지원 금액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를 “배부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진료 1회 기준으로 10만원을 지급하며, 1명당 총 지원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앞의 “제6장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 을 삭제한다.

제17조와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0장의 제목 “보칙” 을 “산후조리경비 지원” 으로 한다.

제29조를 제32조로 하고,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지원대상) 산후조리경비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아이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지원내용)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은 산모 1명당 최대 50만원으로 한다.

제31조(지원절차) ①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서와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약국 구매 명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산후조리경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보칙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경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분만예정일	
주소			의료기관명	
임신력	- 임신 횟수 (회) - 자녀 수 (남 : 명, 여 : 명) - 정상분만 (회) - 제왕절개 (회)			
과거병력 (해당사항 체크)	결핵 ☐ 빈혈 ☐ 고혈압 ☐ 심장질환 ☐ 당뇨/임신성당뇨 ☐ 암 ☐ 감염병(매독, AIDS) ☐ 기타질환 ☐ ()			
	조기 진통	☐	절박유산	☐
	분만관련 출혈	☐	자궁경부 무력증	☐
	중증 임신중독증	☐	분만전 출혈	☐
	양막의 조기파열	☐	전치태반	☐
	태반조기박리	☐	양수과다	☐
지원내용	임신축하선물 ☐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 산후건강관리 물품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산전·후 건강관리(임산부 등록·검사·영양제 등) 지원”에 있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수집·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산전·후 건강관리(임산부 등록·검사·영양제 등)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목적에 한정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열람·활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 개인정보(DB) 수집의 목적 ◦ 임산부 등록, 검사결과,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대상자 현황 파악 및 관리 ◦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원신청, 지원현황 조사 또는 확인 시 활용 ◦ 산모건강관리사업 통계자료 수집, 분석, 결과 추출 및 정책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 ◦ 산모건강관리 사업이 타 지원사업((예)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등)과 연계될 경우 활용 ☐ 개인정보(DB)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의 관할 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리 시 영구			
본인은 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지 (도로명주소)				출산자와 관계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지 (도로명주소)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사용 내역	일자	상호명	내역		금액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1조에 따라 산후조리경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신청인 첨부서류 >						
- 공통서류: 지출증빙서류(영수증 등),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각 1부						
- 추가서류: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약국 구매 명세서 1부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산후조리경비 지원 확인(담당공무원 작성)					
확 인 사 항	신청인	성 명			
		주 소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원금액	원	지원 부적합 내역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약국 구매 명세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지 (도로명주소)		출산자와 관계	
출산자 (산모)	성명		전화번호	
	주소지 (도로명주소)			
구매 내용	일자	품명		금액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1조에 따라 산후조리를 위해 상기 의약품 등을 구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약국 상호명 : _____ 약사 성명 : _____ (직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u>“산후조리경비”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u>
제5조(출산장려지원) ① 군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략) 4. <u>산전후</u> 건강관리 지원 5. (생략) 6. <u>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u> 7. ~ 9. (생략) <u><신설></u> 10. (생략) ② (생략)	제5조(출산장려지원)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산전·후</u> ----- 5. (현행과 같음) <u><삭제></u> 7. ~ 9. (현행과 같음) 10. <u>산후조리경비 지원</u>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의 중지 등) ① (생략) ② <u>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u>	제6조(지원의 중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하게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u>

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

제12조(지원대상 등) ①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는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로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임산부는 신분증과 임신확인서(산모수첩을 포함한다)를 가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전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물품의 종류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소득이나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절차) ①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물품을 배부하거나 지원 금액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 또는 지원 물품을 환수하거나 그 가액을 반환 받아야 한다.

제4장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

제12조(지원대상 등) ① 산전·후 --

-----.

② 군수는 산전·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3조(지원절차) ①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을 -----

-----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

② ----- 산전·후 -----

----- 배부한다.

제15조(지원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1회 진료 시마다 10만원을 지급하고,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

제17조(지원대상 등) ①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모든 산모와 신생아로 한다.

② 군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중 일부에 대한 지원 규모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군수는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절차) ① 건강관리사 이용

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15조(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진료 1회 기준으로 10만원을 지급하며, 1명당 총 지원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제10장 보칙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장 산후조리경비 지원

제29조(지원대상) 산후조리경비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아이
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
로 한다. 다만,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때
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지원내용) 산후조리경비 지원

금은 산모 1명당 최대 50만원으로
한다.

제31조(지원절차) ① 산후조리경비 지

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
지 제9호서식의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서와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약국 구매 명세
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
내에 산후조리경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산전 · 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분만에정일			
주 소	의료기관명			
임신력	- 임신 횟수 (회) - 자녀 수 (남 : 명, 여 : 명) - 정상분만 (회) - 제왕절개 (회)			
과거병력 (해당사항 체크)	결핵 ☐ 빈혈 ☐ 고혈압 ☐ 심장질환 ☐ 당뇨/임신성당뇨 ☐ 암 ☐ 감염병(매독, AIDS) ☐ 기타질환 ☐ ()			
	조기 진통	☐	절박유산	☐
	분만관련 출혈	☐	자궁경부 무력증	☐
	중증임신중독증	☐	분만전 출혈	☐
	양막의 조기파열	☐	전치태반	☐
	태반조기박리	☐	양수과다	☐
지원내용	임신축하선물 ☐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 산후건강관리 물품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산전·후 건강관리(임산부 등록·검사·영양제 등) 지원”에 있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수집·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산전·후 건강관리(임산부 등록·검사·영양제 등)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열람·활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 개인정보(DB) 수집의 목적 ◦ 임신부 등록, 검사결과,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대상자 현황 파악 및 관리 ◦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원신청, 지원현황 조사 또는 확인 시 활용 ◦ 산모건강관리사업 통계자료 수집 분석 결과 추출 및 정책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 ◦ 산모건강관리 사업이 타 지원사업(예)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등)과 연계될 경우 활용 ☐ 개인정보(DB)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의 관할 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 시 영구			
본인은 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신 설>

[별지 제9호서식]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지 (도로명주소)			출산자와 관 계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지 (도로명주소)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일 자	상 호 명	내 역		금 액	
사용 내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1조에 따라 산후조리경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신청인 첨부서류 >

- 공통서류: 지출증빙서류(영수증 등),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각 1부
- 추가서류: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약국 구매 명세서 1부
-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산후조리경비 지원 확인(담당공무원 작성)						
확 인 사 항	신청인	성 명				
		주 소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원금액	원		지원 부적합 내역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설>

[별지 제10호서식]

약국 구매 명세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소지 (도로명주소)		출산자와 관 계	
출산자 (산모)	성 명		전화번호	
	주소지 (도로명주소)			
구매 내용	일 자	품 명		금 액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1조에 따라 산후조리를 위해 상기 의약품 등을 구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약국 상호명 :
약사 성명 : (직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붙임 1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제30조(지원내용) 산후조리경비는 산모 1명당 최대 50만원으로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울주군 출생아수 '22년 1,127명, '23년 1,082명으로 감소하다 '24년 1,100명으로 소폭 증가함

○ 2025년 출생아수 추계: 1,100명

- 1,100명 × 500,000원 = 550,00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세출	산후조리경비	2,750	550	550	550	550	550
	소계(a)	2,750	550	550	550	550	550
세입	소계(b)	-	-	-	-	-	-
총비용(a-b)		2,750	550	550	550	550	55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2,750	550	550	550	550	550
국비		-	-	-	-	-	-
시비		-	-	-	-	-	-
군비		2,750	550	550	550	550	550
기타		-	-	-	-	-	-

III. 기타사항

1. 부대의견: 해당없음

2. 협의사항: 기획예산실 예산팀장 협의

3. 작성자: 울주군보건소 건강관리과 지방의료기술주사보 최윤미(052-204-2862)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국비	소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기금	-	-	-	-	-	-
시비	소계	-	-	-	-	-	-
	보조금	-	-	-	-	-	-
	기타	-	-	-	-	-	-
군비	일반회계	2,750	550	550	550	550	550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지방채		-	-	-	-	-	-
민간자금		-	-	-	-	-	-
합 계		2,750	550	550	550	550	550

2.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자체수입(군비 100%)

3. 부대의견: 해당없음

4. 협의사항: 기획예산실 예산팀장 협의

5. 작 성 자: 울주군보건소 건강관리과 지방의료기술주사보 최윤미(052-204-2862)

붙임 2

관련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2023. 12.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4., 2023. 12. 26.>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저출생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2024. 12. 6.>

1.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
 2. 결혼·임신·출산·양육·보육 및 교육
 3. 다자녀가정 지원
 4. 출산영향평가를 위한 사업
 5. 인구 감소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행사(설문, 투표, 공모전 등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경품 및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전문개정 2019. 11. 7.]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3. 7.>

붙임 3

현행 조례 및 규칙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2023.12.28 조례 제154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을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및 출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결혼·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6., 2020.6.3., 2020.12.31.>

1. “영아”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영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 등을 말한다.
4. “신혼부부 주거비용”이란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 유지를 위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월세, 냉난방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5. “출산장려 교통비”란 난임시술을 받는 사람 또는 임산부가 산전진료나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6. “미혼남녀”란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를 맺고 있지 않는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말한다.
7. “입학축하금”이란 셋째 이상 자녀(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を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8.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그에 따른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법 제21조의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출산장려지원) ① 군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1. 출산장려금 지원
2. 출산축하용품 지원
3.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4.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
5.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6.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
7.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8. 결혼장려 지원
9.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출산장려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다자녀가정의 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다자녀가정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이용료, 주차료 등 감면<개정 2023.12.28>
2. 다자녀 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 조성 및 층간소음 예방 등을 위한 물품 등 지원
<신설 2022.3.10.>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6.3.]

제6조(지원의 중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지원물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개정 2023.12.28>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2장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제7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자일 경우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②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축하용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영아가 부모 이외의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주소지에서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대상이 된다.

④ 영아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 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현세대의 자녀수만 인정한다.

제8조(지원내용) 군수는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순위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한다. <개정 2020.12.31.>

1. 첫째 영아인 경우 70만원
2. 둘째 영아인 경우 250만원
3. 셋째 영아 이상인 경우 500만원

제9조(지원절차 등) ① 읍장·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람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 여부, 신청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출산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

서(이하 “통합처리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③ 출산축하용품 신청대상자는 통합처리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제10조(지원대상)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대상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11조(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3.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된 후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3.12.28>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은 신청인 이름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신설 2023.12.28>

제4장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

제12조(지원대상 등) ①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는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로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임산부는 신분증과 임신확인서(산모수첩을 포함한다)를 가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전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물품의 종류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소득이나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절차) ①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물품을 배부하거나 지원 금액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5장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제14조(지원대상)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대상자는 난임시술을 받는 사람과 임신부로서,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2.11.10.>

제15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산장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1. 난임으로 시술을 받는 사람은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개정 2022.11.10.>
2. 임신부는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 임신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개정 2022.11.10.>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1회 진료 시마다 10만원을 지급하고,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제16조(지원절차) ① 출산장려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난임시술, 산전 진료, 출산 등의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병원 진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출산장려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장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

제17조(지원대상 등) ①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모든 산모와 신생아로 한다.<개정 2023.12.28>

② 군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중 일부에 대한 지원 규모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군수는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절차) ① 건강관리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제7장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개정 2019.12.26.>

제19조(지원대상)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혼인신고일로부터 24개월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개정 2023.12.28>
2. 군 소재 주택을 매입·전세 계약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3.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본조신설 2019.12.26.]

제20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거주자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26.]

제21조(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12.31., 2023.12.28>

1.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 혼인관계증명서(다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혼인 예정 시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제출)<개정 2023.12.28>
3. (부부의) 주민등록표 등본
4.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5.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6. (부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22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8장 결혼장려 지원 <신설 2019.12.26.>

제23조(지원대상) 결혼장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24조(지원내용) 군수는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
2. 결혼예정자에 대한 예식비용지원사업
3. 결혼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 및 가족사랑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9.12.26.]

제25조(지원절차) 예식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울주군 사랑이음 결혼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본조신설 2019.12.26.]

제9장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신설 2019.12.26.>

제26조(지원대상) ①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학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자일 경우 입학일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할 수 있다.

② 입학축하금은 셋째 이상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27조(지원내용) 입학축하금은 3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28조(지원절차) ① 읍장·면장은 입학축하금 신청자에게 지원 대상 여부, 신청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입학축하금 신청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및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을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읍장·면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확정된 후 지원 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10장 보칙 <신설 2019.12.26.>

제29조(대장의 관리)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와 읍장·면장은 제5조의 출산장려지원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의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2019.12.26.>]

제30조 <삭제 2023.12.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03.13]

(일부개정) 2025.03.13 규칙 제62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급방법) 조례 제8조의 출산장려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첫째 영아인 경우 1회 70만원
2. 둘째 영아인 경우 5개월간 매월 50만원
3. 셋째 영아 이상인 경우 10개월간 매월 50만원

제3조(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3.>

1.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금액이 연 1억원 이하
2. 대출이자는 대출금액의 2억원 한도로 대출상환시 대출잔액의 2퍼센트
3. 지원기간은 최대 8년

[본조신설 2020.4.2.]